# 월간 세무회계 뉴스 (2017년 04월)

주제 : 업무용승용차 손금인정

### 1. 도입취지

업무용승용차의 사적사용을 제한하고, 과도한 고가수입차의 손금인정을 규제하기 위해서 일정 요건에 따라 손금인정 기준을 마련

2. 적용대상자

법인 및 개인사업자

3. 대상차량

개별소비세 제 1 조제 2 항제 3 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

- 장례서비스업자의 운구용 승용차, 경차, 승합차, 택시 등 운수업,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는 제외

#### 4. 주요내용

(1) 관련비용

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, 임차료, 유류비, 보험료, 수선비, 자동차세,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·유지를 위하여지출한 비용

(2) 업무전용자동차보험

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직접 운전한 경우 또는 계약에 따라 타인이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(개인사업자는 가입 의무 대상에서 제외)

## (3) 손금산입한도

-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업무용 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손금불 산입
- 감가상각비(임차의 경우 감가상각비상당액)는 매년800만원 한도로 손금 산입(한도초과분은 다음 연도 이후로 이월)
-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도 감가상각비와 동일하게 적용

#### (4) 소득처분

사적 사용이 확인된 법인 소유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 등 관련비용은 사용자에게 소득 처분